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박주민 · 이주희 · 김 윤
진성준 · 이수진 · 남인순
손 술 · 진선미 · 김한규
이병진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서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

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다. 지역상담기관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의6 신설).

마.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바.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모성의”를 “국민의”로, “양육 지원”을 “양육에 관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상담기관”이란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2. 임신·출산·임신의 유지 및 종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임신·출산·임신의 유지 및 종결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분석
4. 그 밖에 임신·출산·임신의 유지 및 종결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상담기관이 1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신·출산·영양·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2.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온라인 상담을 포함한다)
3.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4. 그 밖에 임신·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상담의 목적을 벗어나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일시가 기재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기준, 지역상담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의6(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상담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1조의5 중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중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국민생식건강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월경 건강 관리,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 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2.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임신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바.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16세 이상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상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18세 이상으로서 혼인한 경우

③ 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제1항제5호

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4.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경비
5.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역상담기관 운영 경비
6.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
-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부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의5·제1호의6·제2호·제2호의2·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6호”를 “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2항제6호”로 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
- 1의2.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3. 제1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4. 제1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제28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를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와 시술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 ----- ----- -----국민의----- ----- 양육에 관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 ----- -----.
9. ~ 12. (생략) <신설>	9. ~ 12. (현행과 같음) 13. “지역상담기관”이란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신 설>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7조의3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
관을 말한다.

제7조의2(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
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
정할 수 있다.

1.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2. 임신·출산·임신의 유지 및
종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임신·출산·임신의 유지 및
종결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분석

4. 그 밖에 임신·출산·임신의
유지 및 종결 등의 지원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상담기관이 1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

<신 설>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신 유지·중결에 관한 상담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2.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온라인 상담을 포함한 다)

3.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4. 그 밖에 임신·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상담의 목적을 벗어나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신 설>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일시가 기재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기준, 지역상담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의6(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상담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u>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하 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은 <u>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 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2조(<u>인공임신중절 예방</u> 등의	----- ----- ----- -----<u>시장·군수</u> · <u>구청장에게</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청문)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1. <u>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 상담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u> 2. <u>제7조의3제5항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 는 경우</u> 3. <u>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 는 경우</u> 제12조(<u>국민생식건강 증진</u> 등의
--	--

사업)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
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
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
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월경 건강 관리,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
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국민의 생식건강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인
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상
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받으
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
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
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
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 의사
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

람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 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2.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및 계획임신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도록 강제하

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 조치결정서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

	<u>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u> <u>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u> <u>등에 관한 특례법」 제47</u> <u>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u> <u>령결정서</u> <u>바.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없</u> <u>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u> <u>폭행·협박 등 학대받은</u> <u>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u> <u>서류</u> <u>2. 16세 이상으로서 법정대리인</u> <u>의 동의를 받는 것을 거부하</u> <u>고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상</u> <u>답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u> <u>우</u> <u>3. 18세 이상으로서 혼인한 경</u> <u>우</u> <u>③ 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u> <u>따라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u>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u> <u>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른 인공</u> <u>임신중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 9.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경비

5.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역상담기관 운영 경비

6.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

7. ~ 12.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

제26조(벌칙) ① -----

ㄴ.

<신 설>

1. (생 략)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지 아니하고 상담사실확인서
를 발급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

-----.

1.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
중절을 받은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
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
람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
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
사

1의3. 제1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공임신
중절을 한 의사

<신 설>

1. (생략)

1의2. (생략)

2. ~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의4. 제1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5.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6.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제1항제1호의5·제1호의6·제2호·제2호의2·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

2. 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2항제6호-----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u>인공임신중절수술을</u> <u>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u>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 -----<u>인공임신중절을</u> <u>받은 자와 시술한 자</u>----- ----- ----- -----.
--	---